

음식점 등 가격표시제 안내

1 모든 식품접객업소 “최종지불 가격”으로 표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은 제외)에서는 영업소 내부 또는 외부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별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음식가격에 포함해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

▶ 위반 시 : 1차(시정명령), 2차(영업정지 7일), 3차(영업정지 15일)

시행일 : 2013. 1. 1

기 존	변 경
○○음료 ... 10,000원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 별도 ○○요리 ... 20,000원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 별도	○○음료 ... 12,000원 ○○요리 ... 24,000원

2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의 가격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 가능

▶ 위반 시 : 1차(시정명령), 2차(영업정지 7일), 3차(영업정지 15일)

시행일 : 2013. 1. 1

기 존	변 경
등심 스테이크 27,000원 부가세(10%) 별도 쇠고기 - 국내산 한우	등심 스테이크 29,700원 (쇠고기: 국내산 한우)
삼겹살(1인분 200g) 15,000원 부가세(10%) 별도(원산지: 칠레산)	삼겹살(칠레산) 100g 8,250원
등심(150g) 33,000원(호주산) 부가세(10%) 별도	등심(100g) 24,200원(호주산) (1인분 150g 36,300원)
된장찌개 6,000원 (※별도의 부가가치세 등이 없는 경우)	된장찌개 6,000원

※ 「원산지표시법」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식육 중량 표시 적용범위(예시)

- 생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를 구워먹는 경우
- 양념된 갈비, 불고기 등 손님이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
- 요리(샤브샤브 및 닭갈비 등)의 고기 추가 주문시 추가 제공되는 고기
- 애벌(훈제 등)구이 된 고기를 다시 조리해 먹는 경우

※ 적용제외 되는 사례

- ① 탕, 찜, 찌개, 보쌈, 죽발(닭발), 육회, 스테이크, 돈까스, 바비큐 등 조리가 완료되어 바로 섭취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품목 제외
- ② 샤브샤브, 닭갈비 등 야채가 포함되어 제공되는 품목 제외 (단, 추가고기는 표시대상)
- ③ 1마리 단위로 제공되는 닭, 오리 등은 제외

◆ 가격표시 : “십원 단위”로 표기(원단위 이하 절사)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안내

신고 면적이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주요메뉴 5가지 이상의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시행일 : 2013. 1. 31

▶ 집중홍보·계도 : 3개월(4.30일까지)

▶ 위반 시(5.1부터) : 1차(시정명령), 2차(영업정지 7일), 3차(영업정지 15일)

대상업소 |

- 신고 면적이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시 품목 수 |

- 주요 항목 5가지 이상, 취급메뉴 5가지 미만일 경우 전 품목 표기

규격 및 표기방법 |

- 크기 : 가로폭 200mm이상 330mm이하, 세로높이 600mm이하, 정보량에 따라 조절 가능
- 소재 : 알루미늄, 나무, 유리, 아크릴 등 수지류 및 각종 시트류
- 내용 : 상호, 메뉴명, 가격, 주문단위(예 : 1인분, 100g, Regular 등)
- 서체 : 견고덕, 중고덕(외국어), 윤고덕(제작용)



게시 위치 |

- 일반기준 : 외부가격표시물은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업소에 입장하기 전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 입지별 기준
 - 도로변에 접해있는 영업소는 원칙적으로 주출입문 또는 그 주변에 게시 그 외 창문, 외벽면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도 게시 가능
 - 빌딩 등 대형건물의 2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소재한 영업소의 경우는 개별 영업소 이동통로에 게시 가능 (예 : 1층 로비,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등)

표시 대상 : 최종지불가격 |

- 품목 단위는 타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 (예 : 음식점의 공기밥, 라면사리 등은 해당되지 않음)

게시 방법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서울시 관련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시

※ 실외 입관판, 베너(이젤 포함), 현수막 형태로 게시는 불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 가격과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 품목명, 품목별 가격정보와 무관한 사항은 표시할 수 없음

업종별 세부 표시 방법 |

- 서비스의 단위가 1인분이 아닌 경우 주문 가능한 최소단위 인원과 가격으로 표시 가능
- 기존 메뉴판(책자형 포함)을 활용하여 외부에 게시 가능
- 투명한 창문, 출입문 등의 내부에 직접 부착하여 옥외 게시물과 동일하게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함
- 푸드코트 등 별도 출입문이 없는 음식점의 경우 계산대 주변에 게시 가능

가격표 중국어, 일어, 영어 병기 안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가격표에 중국어, 일어, 영어 병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중구의 위상을 훼손하는 바가지 요금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식관광 활성화에 다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 병기 메뉴판은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메뉴판 만들기」 사이트 (<http://kto.visitkorea.or.kr>)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장 전체 금연구역 확대 지정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 이상인 영업소
- ▶ 2014년 1월 1일부터 100㎡ 이상인 영업소
2014년 12월 31일까지
-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위반시(과태료) : 1차(170만원), 2차(330만원), 3차(500만원)
※ 흡연자 : 과태료 10만원

※ 문의 : 중구청 건강도시과(건강도시팀) ☎ 3396-6345



문의 : 중구청 위생과 ☎ 3396-5650

음식점 원산지표시 안내

원산지표시 문의 농림수산물부 소비안전정책과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1899-2112 www.qia.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www.naqs.go.kr

 여기는 **행복1번지** 중구입니다.

2013. 06. 28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양념소 등 포함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시키며, 음식점 수족관에 살아 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합니다.

대상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대상품목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을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4개품목 추가, 3개 품목을 확대하였습니다.

현행품목	추가품목	확대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양념소 등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 (명태, 뱀어 등 건조품 제외)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표시방법

1.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 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방법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글자크기	음식명 1/2 이상	음식명과 가격 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
표시위치	규정 없음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
배추김치	배추만 표시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혼합 표시	규정 없음	섞음비율이 높음순으로 표시 표시의 예) 갈비탕(호주산, 국내산 한우) : 호주산이 국내산 한우 보다 많이 사용되었다는 의미

2.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합니다. 다만 영업장에 **메뉴판, 게시판** 중 어느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 표시하면 됩니다.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하여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판은 가로×세로 또는 세로×가로 : 21cm×29cm 이상,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입니다.

3.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재료의 경우 그동안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 하였습니다.

가공되는 김치류의 포장재 표시는 현재는 사용된 원료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가지 원료를 표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 거짓표시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인터넷 공표 : 거짓표시를 한 자 또는 2회 이상 미표시를 한 자의 위반내역 등 공개

각 음식별 원산지 표시방법

	쇠고기 조리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쇠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육우, 젓소로 구분하여 표시 예) 갈비(국내산 한우), 등심(뉴질랜드산), 설령탕(육우 국내산 한우, 고기 호주산) 불고기(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돼지고기 조리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이용·탕용·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배달용은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영수증, 전단지 등 표시 가능 예) 삼겹살(벨기에산), 보쌈(돼지고기:미국산) 김치찌개(돼지고기:벨기에산과 국내산 섞음)
	닭고기 조리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혼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예) 삼계탕(닭고기 : 국내산), 닭볶음탕(닭고기:미국산) 닭갈비(닭고기:국내산과 미국산 섞음)
	오리고기 조리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혼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예) 오리탕(오리고기:국내산), 오리훈제(중국산) 오리로스(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양고기 조리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혼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예) 양고기 샤브샤브탕(양고기:뉴질랜드산), 염소 불고기(염소:국내산) 염소탕(호주산과 국내산을 섞음)
	쌀(밥류) 조리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현미, 전쌀 포함)의 원형이 유지된 밥류가 표시대상이며, 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 예) 쌀(국내산), 쌀(중국산) 쌀(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배추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찌개용·탕용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 예)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배추김치(중국산)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표시 예) 넙치회(국내산), 참돔회(일본산), 참돔구이(원양산), 넙치메운탕(원양산), 태령양산, 참돔회(일본산), 뱀장어구이(영국산), 명태(러시아산), 고등어(일본산), 갈치(중국산)

그 밖의 공통사항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섞거나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 예)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 덴마크산, 모듬회(넙치 : 국내산, 조피볼락 : 중국산, 참돔 : 일본산)
-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등을 사용한 경우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이를 생산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으로 표시 가능
-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 대상인 농수산물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다만, 농수산물 가공품 원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 가능 예) 햄버거(쇠고기 : 국내산, 양념불고기(쇠고기 : 호주산)

음식점 등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금연 안내



서울의 중심 **중구**

